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061

발의연월일 : 2021. 8. 13.

발 의 자: 강선우 · 임종성 · 양이원영

홍성국 • 신동근 • 이수진

남인순 • 윤준병 • 허 영

이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하여 국가적 지원이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실제로 올해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은 일반청년보다 월임금은 적었고, 실업률은 높았으며, 대학진학률은 낮았음. 또한, 자 살을 생각한 비율 역시 일반청년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음.

최근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 서고, 또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호아동의 충분한 준비를 위하여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 간 연장 연령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3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24세까지 보호조치를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보호대상아동이 24세 이전에 보호조치 종료를 요청하면 보호조치를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②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 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 다)에 재학 중인 경우
 -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

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 ③ (생 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 <삭 제> 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 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 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 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 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에서 직업 관련 교육 · 훈련 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 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생 략) <신 설>

⑤ (현행과 같음)

-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
 구하고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
 호대상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
 라 24세까지 보호조치를 연장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
 아동이 24세 이전에 보호조치
 종료를 요청하면 보호조치를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②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 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 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 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

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반에 의탁가져 명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 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